

의안번호	2213411
의 퇴 인	이훈기의원
회 답 일	2025.10.22.
추계번호	25D5429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9조의7 (손해배상의 보장)	공공기관(행정기관, 공공기관, 각급 학교 등)을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9조의7 (손해배상의 보장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39조의7제2항¹⁾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그 보장을 위한 조치(보험·공제 가입, 준비금 적립)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, 추가개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²⁾는 국가기관, 지방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39조의7(손해배상의 보장)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,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14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(적용 예외 대상에서 “공공기관” 제외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고, 그 밖에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이에 해당함

[표 1]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구분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(제2호)	▶ 비상급종합병원 및 비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매출액 등이 1,500억 미만인 경우
	▶ 비상급종합병원 및 비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정보주체 수 100만명 미만인 경우
	▶ 비상급종합병원 및 비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 5만명 미만인 경우
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(제3호),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(제4호)	▶ 매출액등이 1,500억 미만인 경우
	▶ 정보주체 수 100만명 미만인 경우
	▶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만명 미만인 경우
각급 학교(제5호)	▶ 초등학교, 중학교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	▶ 재학생 수 2만명 미만인 대학교

자료: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, 준비금 적립 규모는 각 기관의 매출액,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단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
-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공공기관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, 손해배상금의 단가 책정에 필요한 각 공공기관의 보유 개인정보 규모, 유출 시 정보주체의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정보가 없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료 등의 단가, 적립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2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

나.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